

日本의 農產物 輸入·流通制度 및 輸入現況 모니터링 調査

– WTO 出帆과 관련한 각종 現況 변화중심으로 –

편집자주 다음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WTO사무국에 제출한 '농업에 관한 최종국별 약속표' 및 이에 의거한 국내제도 및 관세인하 조치 내용을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KOTRA 해외시장에 特輯으로 게재된 내용중 전재한다.

I. 수입 및 유통제도 변화

1. 수입제도변화 조치 내역

가. 일본의 농업에 관한 최종국별 약속표 요지

– WTO협정에 포함된 농업합의는 국내 농업지지, 시장역세스, 수출경쟁 등 3분야에 있어서 약속을 6년간에 실시하고 검역·위생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약속 실시상황을 감시하는 농업위원회를 WTO에 설치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임.

1) 국내지지 삭감

○ 기준기간(1986~88년) 기준 농산물보조금(국내지지) 약 5조엔을 2000년에 약 4조엔으로 20% 삭감함. 삭감대상에서 제외된 국내지지는 ① 쌀 생산조정 재정지출, 농업·농촌의 인프라정비보조, 시험·연구·보

급보조, 농업금융보조, 공적비축보조, 농업공체부금 국고부담 등, ② 최소한 조항에 해당하는 계란, 야채, 과실에 대해서는 보호함.

2) 국경조치

○ 관세화의 특별조치(쌀에 대한 부분 개방)

– 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적용함. 95년부터 6년간은 관세 상당량의 설정은 행하지 않고, 95년에 기준연도의 국내소비량 4%(37만9천t), 2000년에 8%로 행하며, 국가무역기업은 기준연도의 판매실적에 기초해 계산된 액을 실령(한도)으로 수입차익(마크업)을 1kg당 292엔 징수함.

○ 관세화

– 쌀 이외의 수입제한품목은 통상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를 관세화함. 관세상당량의 설정은 기준연도의 내외가격차를 기초를 산출하고, 실시기간중에 15%를 삭감함. 관세화와 아울러 역세스약속은 기준연도의 수입 실적 또는 수입할당량을 기초로 설정하고, 일반관세를 기준연도로 같은수준 징수 함.

품 목	기 존 세율	인 하 조 치 (2000년 세율)
쇠고기	50%	38.5%(수입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50%(양허세율)까지 인상시키는 긴급조정조치를 확보)
돼지고기	5.0%(종가세) 414억엔33천/kg (종량세)	4.3% 361엔/kg
생선, 오렌지 (6~11월)	20%	16%
(12~5월)	40%	32%
오렌지 주스 (무과당·당분 10% 초과)	30%	25.5%
천연주스	35%	29.8%(종류에 따라 26.3%, 22.4%)
아이스크림 (당분 50% 미만)	28%	21%
캔디류	35%	25%
마카로니, 스파게티	40엔/kg	30엔/kg
비스킷(가당)	24%	15%
대두·채종유	17엔/kg	10.9%/kg
위스키	13.7%(94년)	10년간에 철폐
맥주	15%(94년)	8년간에 철폐

註 : 원칙적으로 6년간에 걸쳐서 균등 삭감

이 세율은 실시기간중은 삭감하지 않음.

- 관세화 품목 : 유제품, 밀, 보리, 전분, 잡두, 낙화생, 생사, 누에고치 등

- 밀, 보리, 유제품, 버터 생사는 식량청 또는 산하사업단에 의한 국가무역체제를 유지하고 생사 이외는 일반관세에 대해 국가무역기업이 수입차익을 징수함.

- 수입차익은 기준연도의 판매실적에 의한 금액을 상환으로 하고, 실시기간중에 15% 삭감함.

- 이러한 관세화품목들은 수입량이 일정률 이상 증가한다거나, 수입가격이 일정률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일정 관세율을 인상해 특별 세이브가드를 적용함.

- 일반관세율의 인하

- 6년간에 평균관세 인하율 36%, 개별 품목의 최저인하율 15%의 조건을 충족시킴, 주된 품목의 관세인상오포는 아래와 같음.

- 기타 억세스 개선

- 공업용 옥수수의 무세수입에 관해서

일정 억세스 개선을 도모

3) 수출보조금

- 수출보조금을 공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음

- 지금까지 수출보조금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수출보조금을 도입할 수 없음.

나. 농업합의에 따른 일본국내 주요법률 개정 내용

1) 주요 식량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요

(95년 11월부터 시행)

-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축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수요공급의 조정을 도모

○ 쌀 유통규제 완화

- 현행 쌀생산자에 대한 대정부 판매의무를 폐지

- 따라서 쌀 생산자는 정부, 일반출하업

자, 도소매상, 소비자 등에게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어 유통구조의 다양화가 이루어짐. 단 자주유통미와 정부미는 판매선을 특정 함.

– 쌀 도소매업은 현행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라도 영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

• 따라서 규제도하에서는 주민 1,500명 당 소매점 1개소 비율로, 각 도도부현(행정 구역)내 소매점수가 결정됐으나, 신제도하에서는 소매점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짐.

• 또한 소매점은 복수의 도매상과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며, 영업구역도 도도부현단위로 확대됨.

– 자주유통미를 계획적으로 유통시키는 주체로서 자주 유통법인을 설립 규정

○ 쌀의 수급실태를 반영한 가격형성체계 구축

– 자주유통미의 거래지표 가격형성을 위해 자주유통미가격형성센터 설립규정

– 정부구입가격은 자주유통미가격 동향을 등을 반영, 생산조건 고려 및 재생산을 가능하도록 결정

○ 쌀의 유통은 자주유통미를 주체로 하면서 정부는 정부미 조직을 통해 비축미 운영 및 최소 억세스(쌀수입)의 운용을 행함.

○ 국제적 약속에 의해 정부이외의 자기 관세를 지불하면 보리, 밀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쌀의 판매차익을 비축관련 경비에 활용

2) 가공원료유생산자보조금 등 잡정조치 법 개정개요

○ 축산진홍사업단에 의한 지정유제품 등의 독점 수입제도 폐지

– 따라서 축산진홍사업단 이외의 자도 관세를 지불하면 지정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됨.

○ 사업단이 민간수입 지정유제품 등을 매입·판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관세를 지불하고 지정유제품이 수입돼 국내 낙농업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업단이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관세의 일부를 사업단이 징수할 수 있

도록 함.

○ 사업단이 현행 억세스분의 지정유제품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국내가격 앙등시에 가격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유제품 등이 수입량과는 별도로 현행 억세스분(연간 13만7천t)을 사업단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잠사가격안정법 등의 일부개정

○ 잠사가격안정법 개정

– 잠사사탕류 가격안정 사업단의 생사독점수입 규정폐지

• 사업단이외의 자도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가능

– 사업단이 민간수입 지정유제품 등을 매입·판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관세를 지불하고 잠사가 수입돼 국내 잠사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업단이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민간수입 잠사에 대한 관세의 일부(3,910억엔/kg)를 사업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잠사사탕류 가격안정 사업단법 개정

– 판매차익을 잠사업진홍자금에 충당

• 사업단이 징수한 판매차익은 사업단의 잠사업진홍자금에 충당

2. 수입관리제도 및 유통제도 변화

가. 식품위생법 및 영양개선법 개정

1) 주요내용

○ 수입식품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후생성은 식품위생법과 영양개선법을 금년 개정했음.

– 천연첨가물의 지정제도 개정

• 종래에는 합성첨가물만 지정제도가 적용됐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천연첨가물 지정제도를 도입해 비지정 첨가물의 경우는 일정한 금지조치가 취해졌음. 그러나 천연향료나 지금까지 식품으로 사용돼 온 천연첨가물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 천연첨가물의 무규제수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천연첨가물에는 바닐라, 에센스, 타라멜 등 천연물로서 1,051종이 있는데, 금번 개정에서

는 천연향료 약 500종과 땅기와 같이 옛날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온 약 100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신규로 개발된 천

연첨가물의 사용은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천연첨가물의 사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후
첨가물	합성첨가물만 지정	천연첨가물도 지정제도로 규제, 단, 종 래에 사용돼 온 첨가물은 제외
잔류농약기준	국내사용 농약위주로 규제, 현재 103종류에 기준 설정	해외사용농약의 기준을 늘리기 위해 농 림수산성 대신이 데이터 수집에 협력
수입수속	서면 등에 의한 심사	컴퓨터에 의한 효율화
수입식품검사	수입업자의 자주적 검사와 검역 소의 검역 병용	특정식품에의 검사명령(강제)의 본격도 입, 민간검사중심으로
영양성분	칼슘강화 등의 표시는 특정식품· 성분에 한정, 기타는 무규제	영양성분이나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는 표시기준에 근거하도록 의무화, 위반자는 공표

- 수입식품검사 제도 개정

- 수입식품 수속의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후생성과 각 검역소 및 주요 수입업자 등을 컴퓨터로 연결, 과거의 위반사례나 각종 기준을 등록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 예정
 - 일본 국내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후생성이 지정하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를 실현화했음. 이 검사제도는 72년에 신설됐는데 다른 부처와의 조정이 복잡해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수속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검사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도입

- 영양개선법 개정

- 영양성분이나 열량의 표시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무규제였던 저칼로리의 표시도 규제

나. 동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제도

1) 검역제도

특이한 개정내용은 없으나 검역제도상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절차 : 수입업자 → 수입검역신청 → 검역 → 합격한 경우 합격증 발급, 불합격한 경우 훈증, 폐기, 혹은 반품 → 통관

- 원칙적으로 전량검사가 원칙이나 샘플링검사를 주로 함. 과거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입국가의 위생상태가 양호하거나, 수출업자의 과거 수출행태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 서류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 검역시는 법률이나 규정과는 관계없이 검역당국의 자유재량이 많이 개입되는 것이 사실임(전량검사, 샘플검사, 서류검사 등 검역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나 합격증 발급 등에 있어서).

○ 검역조치 및 관련제도

- 질병 무발생지역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 국제질병사무국(OIE)의 보고내용을 전제로, 수출상대국의 가축위생제도의 정비상황,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약진접종유무, 기타 가축방질사정에 관한 자료 등을 기술적 견지로 부터 검토

- 가축위생전문가에 의한 현지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칙의 개정을 행함과 아울러, 상대국과의 가축위생 조건 계약을 행함.

- 질병발생 위험도 평가의 방법과 기준

- 1995년에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검토 예정

- 수출국의 검역결과를 인정하는 시스템
• 종래부터 검사대상물(동물 및 축산물)에 관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 부과

- 신속한 통관시스템

• 1997년을 목표로 검역절차의 전산시스템화 및 세관수속의 전산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화를 추진

- 동식물검역절차와 식품검사절차와의 연계

• 94년부터 동식물검역절차와 식품검사 절차를 동시 평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중에 있음.

- 검역 및 검사를 위한 공항 또는 항만의 일부를 별도로 지정

• 동물검역을 위한 검사장소는 동물검역소 또는 지정한 공항 또는 항만내의 검사관이 지정한 장소로서 공항 또는 항만지역내의 보세창고 등을 지정, 검사 혹은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검역 대상물의 샘플링 방법

- 샘플링방법

•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샘플링을 매회 실시하지만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의 뼈, 가죽, 털, 햄, 소시지, 베이컨 등에 관해서는 샘플링 검사를 신청건수의 30% 정도 실시

• 현물검사의 경우 샘플링방법은 수입검사신청수량의 약 0.5%에 상당하는 비율을 무작위로 추출해 그 상태, 종류, 이물질 혼입, 기타 이상유무에 관해 검사를 행함.

○ 검역 및 검사의 신속화

-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검역·검사가 비관세화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엔高현상으로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의 검사 시간 연장 등 검역·검사의 신속화 시책을 취하고 있음. 또한 일본 정부당국은 소요 검사관의 증원, 검사시설의 확충 등의 체제정비를 추진중에 있음.

2) 식품검사제도

특별한 개정내용은 없으나 검사제도의 주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절차 : 수입업자→수입검사신청→

검사→합격의 경우 합격증 발급, 불합격의 경우 반품, 훈증, 폐기→통관

- 원칙적으로는 전량검사 및 샘플링검사를 행하나 실제로는 서류검사를 주로함. 어느 검사를 행하는가는 검사 당국의 자유재량이 많이 개입되나 검역과 같이 수출업자가 기준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는 서류검사를 주로하고 있음.

○ 식품검사

- 검사행태

• 서류검사만으로 식품위생법상의 규격기준 등에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사를 행함. 이 경우 검사에는 수입자가 후생성대신이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수출국공적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행하는 자주검사와 일본내 검역소에서 행하는 검사가 있음.

• 수입자는 수입식품 등 안전, 위생확보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주 검사를 장려하고 있지만,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행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당해 화물의 보관상태, 식품 등 관능적 이상유무 등에 대해서 검사를 행함. 특히 분석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이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행함.

• 부폐·변색·이물질혼입의 확인 및 생선의 독성에 대해서는 관능검사가 필수적임. 현재 일본내 검역소에 209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설치하고 있음.

- 중점 검사대상 식품

• 이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규격기준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음. 중점적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① 과거에 유사한 것으로 위반한 화물 ② 일본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물 ③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후생성으로부터 검사지시가 있었던 화물 ④ 수송중에 사고가 있었던 화물 ⑤ 일본으로부터 수출했던 화물이나 상대국으로부터 위생상 이유로 반품된 화물 등임.

• 이들의 검사비율은 1993년에는 신청건수의 14.7%에 해당하는 12만4,578건을 실시했으며, 이중 검역소가 행한 검사가 4만3,960건(제출건수의 5.2%), 후생성대신 지정검사기관의 검사가 7만2,396건(제출건수의 8.5%), 외국공적검사기관의 검사가 1만

9,242건(제출건수의 2.3%)등이 있음.

– 외국공적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인정

• 외국공적검사기관이란 미국의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가 정한 시험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수출국이 인정, 지정해 행하고 있는 검사기관으로서 일본후생성 대신에게 등록되어 “수출국공적검사기관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관을 말함. 그러나 수송도중 등에 경시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세균, 곰팡이독 등의 검사항목은 인정하지 않음.

– 모니터링 검사

• 통관후에 검사를 행하는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검사는 위반의 개연성이 낮은 식품 등에 관해서 실시하고 있음.

– 수입식품검사 면제제도

• 수입식품검사 면제제도로서 수입식품 등에 관한 사전확인제도를 두고 있음. 이제도는 일본에 수입하려고 하는 식품 등에 관해서 수출국 정부를 통해 후생성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된 것에 관한 검사 면제를 행함.

• 또한 검사성적서의 이화학적 검사항목에 관해서는 6개월(일부의 식품 등에 관해서는 1년 또는 3년)의 계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이 기간내에는 기존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음.

• 그리고 선행 샘플로서 본화물 도착전에 국내의 지정검사기관에서 분석된 것에 관해서도 본 화물과의 일치성이 인정되면 사전 검사성적서를 검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샘플링검사

• 수입식품의 감시강화 등을 위해 후생성에서 검역소에 지시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해서는 꼭히 실시하고 있음.

– 검가결과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수입식품 수속의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후생성과 각 검역소 및 주요 수입업자 등을 컴퓨터로 연결, 과거의 위반 사례나 각종 기준을 등록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

– 검사명령제도의 실효화

• 일본국내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식품은 후생성이 지정하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가 실효화했음.

이 검사제도는 지난 72년에 신설되었는데 다른 부처와의 조정이 복잡해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수속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검사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도입

다. 가공식품의 상미기간 표시제도 도입

○ 개요

– 가공식품의 기한표시인 언제 만들었는 가를 의미하는 ‘제조년월일 표시’로부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가라는 賞味期間을 표시하도록 변경

– 이 표시변경은 식품위생법과 일본농림 규격(JAS)법을 개정해 금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음. 도입의 배경은 제조일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서 오전 0시를 기해 제조를 개시하는 선도경쟁을 폐지함과 동시에 미국, 유럽 등이 제조년월일 표시를 수입장벽이라고 비난함에 따라 기한표시를 구미제국의 주류인 상미기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

– 상미기간으로의 완전 이행까지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농수산성은 제조업체, 유통망 등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는 제조일시와 상미기간을 동시에 병기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본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구입시 선도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년월일 표시가 중요하고, 상미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구미제국에 너무 양보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의 일부 식품회사들이나 소비자단체는 제조년월일표시가 상미기간을 동시에 병기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하고 있음. 상미기간표시만 하는 경우는 선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가공식품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전망

라. 수입농산물의 국명표시 강화

○ 일본 농림수산성은 6월 16일 수입야채 및 수입과일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96년부터 강화할 예정. 이는 엔고를 배경으로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표시가 애매해 일본국내산과 구별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현재 행정지도에 머물고 있는 원산국표시를 수입량이 많은 일부품목에 한해 일본농림규격(JAS)법을 개정,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것

- 생선야채의 경우 수입량은 90년 전후에는 30만t정도에 머물렀으나, 최근의 엔고와 국내생산 및 작황불량에 따라 94년에는 61만t 정도로 급증했음.

● 법개정에 의한 가공식품의 기한표시 기준

표 시 기 준	보존기간	표시방법	주 요 대 상 식 품
소비기한	5일이내	년 월 일	도시락, 식육, 빵, 면류
상미기한 (품질보유기한)	3개월이내 3개월이상 수년이상	년 월 일 년월로 가능 생략 가능	햄, 소시지, 버터, 치즈, 요구르트, 우유, 냉동식품 캔식품, 병식품, 식용유 위스키, 와인, 소금, 사탕

주 : 소비기한은 5일이내에 손상하기 쉽고 5일이 지나면 위험한 식품이 대상, 상미기한은 그 기한을 지나면 품질이 떨어져 곧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식품이 대상

● 규제완화 5개년 계획중의 농산물관련 조치(95년 3월 31일 발표)

구 분	조 치 내 용	실시예정시기
○ 주류판매		
- 주료판매 면허기준	외국의 상황, 소비자의 이익 등을 감안, 기준 등에 관해서 완화 방향을 검토	96년
- 수입품 전문 매장에 수입 주류 판매 장 소 설치	주류소매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판매장과 동일 점포내에서, 새로운 수입품 전문매장을 설치하고 수입주류를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 및 명확화	95년
○ 농산물 검사 제도	수입쌀·보리의 매도전 검사의무 수입쌀·보리의 매도전 검사의무는 수입한 쌀을 정부에 양도하는 때에 한정함. 또한 정부가 수입하는 쌀·보리의 검사는 정부가 스스로 행함.	95년
○ 식 품 영 업 의 허 가	동일자연인, 동일법안에 한해 유효한 식 품 영업허가의 상속 및 계승을 인정	95년
○ 특수영양식 품의 표시 허가	영양성분표시를 행하는 식 품의 표시기준을 규정해, 자기 인증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영양성분의 보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시의 허가제도를 폐지함.	96년

구 분	조 치 내 용	실시예정시기
○ 식 품 첨 가 물 의 사용 규제	식품 첨가물의 지정과 관련, 국제기관의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지정 절차의 간소화,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범위와 그 표준적인 실시방법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함.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식품위생조사회에 자문을 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행함. 이 조사회의 심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공개함.	95년 가이드라인 책정(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WTO의 통보가 필요)
○ 식 품 첨 가 물 등의 사전검 사제도	식품·첨가물 등의 사전검사 신청서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표준화함.	95년 목표
○ 식 품 등의 규격기준	잔류농약에 관해서는 식품위생조사회의 심의를 근거로, 국제적기준에 적합화를 도모, 기준설정을 추진함. 기준 설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는 공표함. 식품중에 잔류하는 동물의약품에 관해서는 식품위생조사회의 심의를 근거로, 물질 전체의 안전성평가를 내리는 잔류기준의 개정을 추진	95년이후 점차 추진
	종합위생관리제조과정을 거친 식품제조·가공품은 후생 성 대신이 승인한 경우, 식품제조기준의 적용을 면제함. 가공공장용 식품표시방법의 간소화를 도모	95년이후 목표
	식품의 일자표시는 제조년월일로부터 기한표시로 이행	95년
○ 식 품에 관한 기준 인정	JAS제도는 식품의 국제규격(CODEX)에 조화되도록 JAS 규격의 제정·개정을 도모	95년 4월
○ 식물검역	수입금지의 해제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 수입시의 검사 등의 절차 등을 명확화·투명화	95년이후 점차 실시
	우루과이라운드교섭시 합의된 SPS협정(위생식물검역에 관한 조치에 관한 협정)을 준수키 위해, 국제기관의 병충해 위험도 평가기준 및 국제적 심사방법 가이드라인 책정에 적극적으로 공헌함과 동시에 동협정에 즉응한 대응을 추진	95년이후 검사 시행(수입금지 해제는 개별신청이 있는 경우)
	또한 일본에서 검역대상이 아닌 병충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병충해외의 위험도 평가방법 등을 검토	
○ 동물검역	동물의 고기 등에 관한 가열처리 기준의 경우, 기름으로 가열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과학적 시험데이터의 제출을 받아 전문가간에 기술적 협의를 행함.	95년
	단, 과학적 데이터의 제출을 받고 협의	
○ 지 정 유 제 품 의 수 입 할 당 제 도	지정유제품 등에 관한 축산진흥공사업단의 일원수입을 폐지하고, 사업단이외의 자도 관세상당량을 지불하면 지정유제품 등을 수입할 수 있음. 유제품에 관한 수입할당제도에 의거한 수입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관세할당제도로 이행	95년 4월
	95년 4월	

구 분	조 치 내 용	실시예정시기
○ 통관수속		
- 항공화물에 관한 수입통관제도	일정 항공화물은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즉시 수입허가 제도”(수입화물을 보세지역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수입허가를 행하는 것) 도입	96년초(시스템 개발이 필요)
- 식품·동식물의 수입절차	식품위생, 동식물검역절차의 시스템화 및 당해 시스템과 통관절차 전산시스템과의 전자적 인터페이스의 추진에 의해 수입절차 전체의 간소화·신속화 도모	95년 시스템개발, 관련기기 정비 96년 인터페이스화, 관련기기 정비
- 주요공항 등에 업무시간 외 업무처리 체제	나리타, 간사이 국제공항이외의 주요공항 등은 행정수요에 대응, 업무시간이외에도 업무처리체제를 갖춤.	95년
- 특혜관세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 세관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혜관세 양에 관한 집계를 행해 세관에서 상세한 정보제공을 가능케 함.	95년
- 수입식품의 신고 및 검사	식품수입신고서는 수출국공적검사기관이 발행한 신고서의 인정을 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어느 때든지 검토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는 신속히 등록처리를 행하고, 제도보급을 도모	95년

註: 이 규제완화 내용은 상기 여타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Ⅱ. 일본의 농산물 수입현황

1. '94년 농산물 수입현황

본항에서는 '94년 및 일본의 농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는데, 이하에서 농산물이란 관세번호(HS코드) 제1~23류에 포함돼 있는 품목(식량 및 식료품)중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식용에 제공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한함.

〈편집자 註〉

가. 개 황

○ '94년 일본의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비 17.3% 증가한 471억2천만弗로 총수입액 증가율 14.2%를 상회했으며, 농산물수입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년비 0.4%포인트 상회함. 이와 같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엔고로 인한 수입메리트 증가, 외국농산물의 적극적 대일시장 공략, 엔고로 인한 달러기준 환산액 증가 등이 기인함.

○ 농산물수입액을 주요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가 전체의 33.9%로 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가 육류(농산물수입액의 16.9%), 3위가 곡물(14.0%) 순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패류와 육류가 전체 수입의 반이상(50.8%)을 점함.

○ 수입액이 급증한 주요품목은 코코아, 커피(전년비 42.4% 증가), 곡물(전년비 38.8%), 야채(전년비 24.1%), 음료(전년비 20.2%), 과실(전년비 15.1%), 어패류(전년비 13.7%), 육류(전년비 13.1%)로 거의 모든 품목이 전년비 증가를 기록함.

○ 수입대상국별 순위와 수입시장점유율(금액기준)을 보면, 1위는 미국(27.8%)으로 '93년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2위인 중국

(10.4%)은 '93년비 1%포인트 상승했다. 이어서 3위 호주(6.7%), 4위 대만(6.3%), 5위 태국(6.1%), 6위 캐나다(5.2%), 7위 한국(3.6%), 8위 인도네시아(2.9%), 9위 프랑스(2.3%) 및 10위 러시아(2.2%) 순임. '93년비 순위 변화를 보면 4위 호주가 대만을 누르고 3위로, 러시아가 덴마크를 제치고 10위로 부상했음. 중국, 호주, 러시아 등은 광활한 영토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한 것이 시장확대의 요인임.

○ 국별 신장률을 보면 제1위 중국(44.0%), 2위 러시아(43.8%), 3위 태국(30.0%), 4위 인도네시아(28.2%), 5위 호주(19.9%), 6위 캐나다(15.5%)가 각각 2자리수의 증가를 기록했으며, 미국, 한국, 프랑스는 1자리수의 증가에 그쳤는데, 대만은 2.8% 감소함.

나. 주요 품목별 동향

1) 육류 및 그 제품

○ 개황

육류 및 그 제품의 수입액은 13.1% 증가한 79억 5,800만弗로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했음. '93년은 쇠고기이외는 '92년 수량수준을 하회했지만, '94년은 양고기 및 구운고기 이외는 전년비 모두 증가했음. 특히 육류 수입액의 약 30%를 점하는 쇠고기와 약 25%를 점하는 닭고기의 증가가 현저함.

○ 쇠고기

- 쇠고기는 수량으로 15.1%, 금액으로는 15.9% 증가한 28억 5,600만Fr로 전년의 최고기록을 갱신했음. 이는 쇠고기의 판매가격이 수입품·국산품 모두 저하했으나 수입품의 가격인하가 국산품 가격보다 더욱 인하돼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또한 쇠고기의 수입평균단가는 '93년 이후 돼지고기의 평균 수입가격을 밀돌고 있음.

○ 돼지고기

- 수량상 8.0% 증가한 49만4천t, 금액상 14.0% 증가한 29억 3천만Fr를 기록했음. 수입품의 내용을 보면 치ルド고기(0°C 전후로 유지된 컨테이너에 생고기상태로 저장된 제품) 전체 수입량의 27.3%, 냉동고기가 72.7%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한 것은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치ルド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했다는 점, 냉동고기에 대한 가공용수요가 회복됐다는 점 등에 의한 것임.

- 수입대상국은 대만이 18.6% 증가해 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5.7% 증가한 반면 주요 수입대상국인 덴마크는 5.7% 감소함.

○ 닭고기

- 수량상 13.8% 증가한 44만4천t, 금액상 24.9% 증가한 9억 5천만Fr을 기록, 각각 2자리수 증가함. 이렇게 닭고기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국내생산이 혹심한 여름더위로 감소한데다가 가공·외식용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닭고기의 가공처리시설이 일본이나 미국자본에 의해 건설돼 있는 중국에 미국산 원료 닭이 수출되어 저렴한 코스트로 가공된 후, 대일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기타 육류가공품은 수량으로 8.7% 증가, 금액상으로는 18.9% 증가한 3억 7천만Fr에 이르고 있음. 이중 햄, 베이컨 등은 수량상 12.6% 증가했는데, 미국과 덴마크산이 전체의 75%를 점하고 있음.

2) 낙농품

○ 개황: 전체적으로는 8.1% 증가한 7억 4,700만Fr이었으며, 수량·금액상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음.

○ 분유

- 17.5% 증가했는데, 이는 '94년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생유의 국내생산량이 저하된데다가, 식용우유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해 가공용 국내원료유의 공급이 부족, 음료·과자 메이커 등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이 작년 11월 긴급수입을 결정한 바 있음.

○ 버터: 수량상 6.8% 증가한 2,600t에 달했는데, 버터의 소비량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량이 대폭 감소함에 의해 수입이 증가한 것임.

○ 치즈 : 직접소비용이 증가한 관계로 전년비 수량상 5.0% 증가했음. 주요 수입국은 호주, 뉴질랜드, 텐마크등임.

○ 아이스크림 : 작년여름의 무더위로 소비가 대폭 확대, 대형슈퍼의 개발수입에 의한 PB상품이 급증해 수량상 39.8%나 크게 증가했으며, 금액상으로도 28.1% 증가했음. 미국산 수입이 대폭 감소한 반면, 호주·뉴질랜드가 원료유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일 수입을 180% 확대시켰음.

3) 어패류 및 그 가공품

○ 개황

- '94년 수입량은 가정소비의 감퇴내지는 정체로 인해 2.1% 증가에 머물렀지만, 수입액은 해외가격의 상승으로 전체적으로는 13.7% 증가한 159억9천만弗에 달해 2년 연속 2자리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수입액을 국별로 보면 1위는 미국(24억8,600만弗)으로, 증가율은 34.1%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5%로 1.5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수입 할당량이 감소한 바다참개의 수입감소 영향에 의한 것임. 2위는 중국(17억Fr)으로 36.5% 급증했음. 시장점유율도 10.7%로 1.8% 포인트 상승했음. 중국은 병충해 영향이 남아 있는 양식새우를 제외한 거의 전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는데, 특히 대만으로부터 생산이 이전된 장어 수입이 대폭 증가했음. 이어서 3위는 태국(13억4,700만Fr)이고 대만은 '93년 2위에서 '94년에는 5위로 급락했음.

- 품목별로 보면 새우, 참치류, 연어류, 계, 장어류 등 5개품목이 10억Fr대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품목으로는 수량상 오징어, 수산물가공품, 금액상 냉동 대구, 오징어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음.

4) 곡물 및 그 가공품

○ 쌀 : 93년 쌀 대홍작으로 일본정부가 행한 긴급수입분이 94년에 통관한 관계로 253만6천t으로 전년의 약 23배에 달했음. 수입대상국은 중국의 110만t(43.3% 점유), 태국 70만t(동 27.7%), 미국 54만t(동 21.2%), 호주 19만t(7.5%)으로 이들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밀 : 쌀의 대체품으로서 빵 및 면류 등 밀가루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수량상 9.3% 증가한 635만t, 금액상으로는 18.5% 증가한 13억5천만Fr에 달했음.

○ 마카로니·스파게티도 국내소비증가로 전년비 15.1% 증가했음. 비스킷은 52.4% 증가한 9,900t에 이르고 있는데 미국산이 최대 점유를 나타내고 있음. 쌀가공품은 78.6% 증가한 17만t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쌀홍작에 따라 일본산 가공원료 쌀의 감소와 이에 동반한 가격상승에 기인했음.

5) 과실 및 그 가공품

○ 생 및 냉동과실 : 수량상 6.4% 증가한 174만8천t, 금액상으로는 6.7% 증가한 14억 2,500만Fr을 기록했음.

○ 오렌지 : 수량상 15.1%, 금액상 17.3% 각각 증가했는데, 이는 주산지인 미국의 국내수요 축소에 따라 대일수출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고가격품종의 수입비중이 높았음.

○ 자몽 : 주산지인 미국 플로리다의 홍작으로 가격이 양등되었으나 대일수출은 증가한 관계로 수량 및 가격상 모두 20% 이상의 증가를 보임.

○ 바나나 : 세계적인 증산으로 가격이 하락, 수량으로는 1.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엔고 등으로 금액상으로는 9.7% 감소했음.

○ 과즙 : 엔고와 산지가격의 하락을 반영, 수량 48.0% 증가, 금액상 42.8% 각각 급증했음. 특히 오렌지과즙은 수량 75.1% 증가, 금액 94.9% 급증했는데, 이는 개발수입에 의한 가격인하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최대수입상대국은 브라질로 수량·금액 모두 급증했음. 사과과즙은 여름의 무더위로 소비가 증가, 수량상으로는 30.9%나 증가했으나 금액상으로는 14.1% 증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사과과즙 증산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주요 수입상대국중 미국이 수위로 수량으로는 5.5% 증가했지만, 금액으로는 6.8% 감소했음.

○ 파인애플통조림은 수량상 20.1% 증가했는데, 주산지인 태국,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했고, 복숭아통조림은 수량상 35.7% 증가했는데, 특히 중국산의 증가가

두드러겼음.

6) 야채 및 그 가공품

○ 개황 : 야채 및 그 가공품의 수입액은 27억8천만弗로 24.1% 증가해, 3년 연속 2 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국별로는 미국(43.4% 증가), 중국(18.9% 증가)의 신장이 두드러겼음. 금액기준 수입시장점유율은 중국이 전체의 38.8%, 2위 미국은 25.3%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 생선·냉동야채 : 수량상 63.5% 증가한 61만톤, 금액상 38.6% 증가한 8억9천만弗로 사상최고를 나타냈음. 이것은 93년의 한서영향이 남아있는 데다가 작년여름 무더위 및 가뭄발생 때문에 일부 생산야채 국내생산이 부족했기 때문임.

- 양파는 무더위에 의한 국내생산지의 작황불량으로 가격이 양등했기 때문에 수량·금액 모두 약 3배 증가해 생선·야채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점했음.

- 양배추류는 여름의 무더위로 작황이 불량해 수량상 54.1%가 증가했으며, 금액상으로도 56.4%가 증가했음. 93년 한서영향으로 양배추 작황이 불량했을 때는 한국산 수입으로 보충했지만, 94년 무더위, 가뭄에 의한 작황불량시는 주로 일본기업이 개발수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국산으로 보충한 관계로 중국으로부터의 양배추류 수입은 수량상 2.6배, 금액상 2.1배 각각 급증했음.

- 호박은 개발수입이 활발한 뉴질랜드 및 멕시코가 2자리수의 증가를 기록했음. 생표고버섯은 수량으로 56.0% 증가한 2만4천t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것은 중국의 생산기술이 향상, 일본내 양판점이 개발상품으로 대량 수입했기 때문인데, 중국산이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99.1%)을 차지했음.

○ 냉동야채

- 수량상 15.2% 증가한 26.6만t, 금액상 18.4% 증가한 3억7,800만Fr을 기록, 사상최고 수입량을 기록했음. 이는 일본의 기후불순으로 생선야채의 공급이 부족해 공급량·가격 모두 안정돼 있는 냉동야채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그 제품에 있어

서는 중국이 수입량의 39.2%를 점해, 93년의 수위인 대만, 2위인 미국을 제치고 사상최초로 수위 공급국으로 부상했음. 또한 냉동야채의 수입은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및 멕시코산이 거의 전량을 점하고 있음.

- 냉동풋콩은 일본상사의 개발수입이 활발한 중국(80.6% 증가, 2만t), 태국(170% 증가, 5천t)을 중심으로 증가했음. 대만은 전년에 이어 수위를 점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태국·중국산의 급증으로 93년비 16.8% 감소한 3만2천t을 기록했음.

○ 야채가공품

- 야채가공품중 가공냉동감자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량(11.8% 증가, 17만2천t), 금액(14.9% 증가, 1억8천만Fr) 모두 2자리수 증가했음. 이와 같이 가공냉동감자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일본국내 의식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 건조야채

- 건조야채는 전년에 이어 수량(12.9% 증가, 4.5만t), 금액(9.1% 증가, 2억6천만Fr) 모두 증가했음. 마른 표고버섯은 수량상 8.2% 증가한 7,800만t, 금액상 10.7% 증가한 7,800만Fr을 기록했는데,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98.5%)을 이루고 있음.

○ 잡 두

- 잡두는 93년 작황불량에 의해 수입할당된 일부가 94년에 통관됐기 때문에 수량(32.1% 증가, 18만t), 금액(38.6% 증가, 1억5천만Fr)로 대폭 증가했음. 중국산이 93년비 41.1% 증가했으며, 전체수입물량의 59.1%를 점유했음.

7) 당류 및 그 가공품

○ 수량상 4.0% 감소한 224만7만t, 금액상 4.8% 증가한 7억2천만Fr을 기록했음. 수량이 감소한 것은 솔비트가공품 및 이성화당류의 수입증가로 가공식품 및 음료용 당류 및 사탕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8) 커피·홍차·향신료류

○ 개황 : 전체적으로 수량상 7.3% 증가한 63만t, 금액상 42.4% 증가한 17억2천만Fr을 기록, 대폭 증가했음.

○ 커피 및 그 가공품

- 전체 수입의 93%를 점하는 원료품

(생두)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량상으로는 8.9% 증가한 37만t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71.7% 증가한 10억7천만弗로 대폭 증가했음. 생두의 가격은 브라질이 작황불량으로 94년 7월부터 급등했음.

○ 홍차는 여름의 무더위에 의해 액체홍차음료의 소비급증 및 가정용 수요증가로 수량상 11.7% 증가한 1만4천t, 금액상 15.7% 증가한 7,300만弗을 기록했음.

○ 우통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차는 여름의 무더위로 수요가 93년에 증가, 수입은 수량상 15.3% 증가한 2만2천t, 금액상 10.4% 증가한 7,800만Fr을 기록했음.

○ 향신료는 그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에스니크요리의 인기가 상승돼 국내시장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수입은 수량으로 9.6% 증가한 2천9만t에 달했음. 또한 주요 후추는 수입가격이 상승되어 금액상 93년비 11.6% 증가한 6,800만Fr을 기록했음.

9) 음료

○ 개황 : 음료 수입액은 93년비 20.0% 증가한 2억3,500만Fr에 달했음.

○ 맥주 : 맥주의 수입은 수량(180% 증가, 32만4천kℓ), 금액(120% 증가, 3억Fr) 모두 급증했음. 이는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국내소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해 대형슈퍼들이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맥주를 대량 수입한 것이 주요원인임.

수입맥주의 국별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65.5%로 압도적이고, 다른 종 및 다양한 맛을 함유하고 있는 벨기에가 7.6%로 2위, 캐나다가 7.4%로 3위를 기록했음.

○ 와인 : 저가품의 대량수입으로 수량상 36.0% 증가한 9만4천kℓ, 금액상 35.6% 증가한 3억8천만Fr을 기록했음.

○ 브랜디 : 금액상 6억2천만Fr로 2.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으로는 2만1천kℓ 12.4%나 대폭 감소했음. 이와 같이 수량상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일본국내경기의 침체로 선물용 및 업무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위스키 : 브랜디와 같이 선물용 및 업무용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맥주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수량(1.1% 감소, 5만8천kℓ), 금액(1.2% 감소, 5억1천만Fr) 모두 미감했음.

○ 비알코올음료 : 비알코올음료 전체적으로는 여름의 무더위 영향으로 수량(99.4% 증가, 25만6천kℓ), 금액(78.9% 증가, 1억6천만Fr) 모두 대폭 증가했음. 미네랄워터는 전년에 이어 계속 수량(120% 증가, 14만7천kℓ), 금액(88.8% 증가, 8,200만Fr) 모두 급증했음. 시장점유율을 보면 프랑스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으나 93년의 88.8%로 부터 94년에는 63.8%로 감소한 바, 벨기에가 93년 1.2%로부터 15.9%로, 미국이 0.7%로부터 9.0%로 대폭 신장됐으며, 호주, 뉴질랜드, 한국도 큰 신장을 나타냈는데, 수입대상국이 다양화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

10) 기타

○ 대두 : 93년에 503만t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지만, 94년은 6.0% 감소한 473만t이 되었음. 이것은 주산지인 미국의 대두생산이 기후불순으로 대폭 감소한데다가 배합사료용 대두수요가 저조했기 때문임.

○ 참깨 : 소비자의 건강지향을 반영해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주요 수입상대국인 중국의 2년연속 작황불량으로 수입가격이 상승되고 있음.

○ 동식물성유지 : 동식물성유지의 수입액은 20.2% 증가한 5억4천만Fr을 기록했음. 팜유는 동식물성유지의 48.6%(수량기준)를 점하고 있는데 수입량은 93년비 1.9% 감소한 34만9천t을 기록했다. 올리브유는 30.0% 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중해식 외식이 유행했기 때문임.

2. 95년의 농산물 수입추세

본행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가 실시되는 첫해인 금년도의 일본의 농산물 수입추세 및 향후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가. 개황

○ 금년 1~3월까지의 농산물 수입은 전년비 10.2% 증가한 98억3,200만弗을 기록했음. 이와 같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엔高로 인한 수입매리트의 증가 및 달러기준 환산액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주요 품목별로 보면 어패류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음료, 과일야채, 곡물 순임.

나. 주요품목별 동향

○ 육류 및 그 제품

- 돼지고기의 경우 작년 여름의 무더위로 일본산의 출하가 약 6%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격 수입산이 1~3개월간 18.3% 증가한 관계로 국내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 수입돼지고기의 가격은 엔高 및 외국산의 적극적 시장공략으로 향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돼지고기의 수입통관시 정부가 정한 기준수입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해야 하나, 금년의 수입가격은 전년보다 약 10엔정도 하락한 1kg당 460엔이며, 우루파이라운드 농업협상에 따라 매년 점차 인하해 약 400엔이 될 전망이어서 수입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임. 수입돼지고기는 현재 일본내 수요의 약 34%를 점유하고 있지만, 50%를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임.

- 또한 닭고기의 경우 금년 1~3월간 전년비 64.5%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치킨 용 등 국내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쇠고기의 경우도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있어 국내 소비가 확대, 수입이 확대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낙농품

- 탈지분유 등 주요 유제품은 금년도부터 6년간 매년 13만7천t의 최저수입의무(미니멈액세스)가 부과되고 있어,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내부족분을 수입분으로 보충하고 있음. 유제품은 수입가격에 25% 관세와 국가 무역기관의 수입시 평균낙찰가격은 446g당 243엔 정도로 공급했음. 이는 국내 도매가격인 238엔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나

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관계로, 일본내 시장에 별무리 없이 침투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낙농품의 수입은 금년 1~3개월간 전년비 40.9% 증가를 기록했음.

- 대두유 및 채종유에는 작년까지 관세가 1kg당 17엔이었으나 95년부터 15엔98전으로 하락했음. 그결과 수입품의 가격은 국산품보다 10% 정도 하락하게 돼 일본내회사들은 가정용 국산품 가격을 인하 조치했음.

○ 곡물 및 그 가공품

- 곡물의 경우 관세화 조치를 취했으나 고관세 및 국내수요 침체로 금년 1~3월간 전년비 24.7%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음.

- 밀, 보리의 경우 우루파이라운드 농업합의에 따라 금년도부터 국가무역에 의한 현행 수입량 이외에도 관세만 지불하면 업자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도록, 2원화 돼 있음. 그러나 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1t당 6만3,300엔이 부과돼 정부수입분 매도 가격의 5만3천엔을 크게 웃돌고 있고, 94년 까지 수입밀을 가공해 수출하는 업자에게 주어지는 우대제도도 금년부터는 폐지되고 있어 수입자유화가 아니라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잡두의 경우 관세화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과자제조업체 등 수요자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수입은 크게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금년도부터 1kg당 417엔의 2차관세를 지불하면 농림수산성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수입이 될 수 있지만 관세율이 500% 전후로 높아 채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수입은 침체상태에 있음.

- 쌀의 경우 94년에는 93년 국내작황불량으로 수입산이 급증했으나 금년에도 94년의 작황호조 및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금년 1~3월간에는 극소량의 수입에 그치고 있음. 특히 실제 수입시에는 식량청이 1t당 최대 29만2천엔의 마크업(판매차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산에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함. 그러나 금년에 농업협의에 따라 미니멈액세스분인 37만9천t을 수입해야 하나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호 등으로 국내소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입한 쌀은 외국원조용으로 해외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한편 2000년에는 쌀의 미니멈액세스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8%에 달할 것으로 저가격의 외국산 수입이 증가하면, 당연히 국내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음.

○ 야채 및 과일

— 야채 및 과일의 수입은 국내작황상황에 따라 많이 변동되는 분야이나 엔高 및 유통망의 개발수입 증가등에 따라 금년 1~3월들어서도 전년비 품목은 엔高 및 시장개방 등으로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가공제품의 경우도 중국, 미국, 호주 등 기존 농산물 수출국의 적극적 시장공략 및 국내생산 감소, 엔高 등으로 인해 수입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3. 한국의 對日 농산물 수출추이

○ 94년의 對日 농산물 수출은 엔高 및

일본내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비 15.1% 증가한 5억5,500만弗을 기록했으며, WTO 출범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가 실시되는 금년들어서도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여 1~3월간 전년동기비 22.0% 증가한 1억 1,300만Fr을 나타냈음.

○ 주요 품목별로 추세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일의 경우는 중국, 미국, 호주 등 강력한 농산물 수출국의 진출강화, 일본 유통망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엔高 현상에도 불구하고 감소 및 보합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축산물의 경우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 추세 및 엔高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만의 공급능력 여하에 따라 한국산의 수출량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조제식품분야에서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기호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추이

(단위 : US \$ 천, %)

품 목	1993		1994		95. 1~3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 채소 및 과일						
— 생채소	10,005	157.0	7,446	-25.6	5,690	5.2
— 건조채소	1,697	-20.9	1,664	-1.9	544	0.4
— 냉동과실	6,500	40.4	5,519	-15.1	323	-46.4
○ 축산물						
— 돼지고기	62,247	45.3	64,557	3.7	17,051	25.6
— 양고기	18,164	26.4	13,816	-23.6	2,996	-17.6
○ 조제식품						
— 김치	28,759	52.0	37,726	31.2	10,899	26.5
— 조제과일	7,348	32.5	7,026	-4.4	1,103	-23.4
○ 과자류	17,924	10.8	18,501	3.2	4,569	12.2
○ 인삼류	32,523	14.2	40,846	25.6	7,730	-21.0
○ 알코올음료	10,770	68.4	19,797	83.8	6,033	29.6
○ 베섯류						
— 표고버섯	3,257	-1.3	11,612	25.6	1,390	27.9
— 송이버섯	20,998	-74.3	25,458	21.2	—	—
○ 밤 류	93,721	-7.0	136,717	45.9	5,659	167.0
총 계	482,834	-9.1	555,523	15.1	113,156	22.0

註 : 총계는 수출통계상 농산물, 베섯류, 밤류를 합한 통계임.

김치의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음. 94년에는 전년비 31.2% 증가한 3,700만弗, 금년 1~3월들어서도 전년동기비 26.5% 증가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김치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업체들의 꾸준한 일본시장형 제품개발, 일본유통망의 개발수입 확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과자류나 알코올음료 등도 엔高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코올음료의 경우 관세인하 및 엔高, 일본국내시장의 수입산 선호추세 등으로 향후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버섯류의 경우도 연간 3천만Fr 전후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밤도 94년의 경우 전년비 45.9% 증가한 1억3,600만Fr, 금년 1~3월도 전년동기비 167% 증가한 560만Fr을 기록했으며, 한국산 밤의 경우는 과자 및 통조림 등 가공용으로 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버섯 및 밤 모두 저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산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 가격파괴 및 엔高현상으로 수입업자들이 중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격인하를 통한 對日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임.

III. 결과종합

○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농협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국농업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조치를 당분간 유예받아 국가무역에 의한 미니멈엑세스(최저수입량)만을 수용했으며, 보리·밀·유제품 등 관세화 조치를 취한 품목도 기준연도의 내외 가격차를 기초로 관세를 부과, 관세도 기준연도 수준으로 징수키로 함으로써 고관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또한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들도 6년간에 걸쳐서 점차 인하하기 때문에 엔高 및 국내작황 등의 영향을 제외하면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쌀 및 관세화품목의 미니멈엑

세스 영향, 관세가 계속 인하되는 쇠고기 및 오렌지 등의 수입이 확대됨과 아울러 국내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농업합의 이외에도 규제완화 등 행정개혁, 외국농산물의 적극적 시장공략, 엔高 및 개발수입 확대, 농업보조금 삭감, 유통에 있어서 상미기간 채용, 검역·검사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농업합의 실시기간이 6년간이기 때문에 7년째인 2001년부터의 WTO하 차기라운드에서는 관세화 품목의 고관세율 대폭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인력 고령화,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내생산이 감소될 전망이어서 농산물 등 식품의 수입증가율이 여타 공산품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한편 94년과 95년초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자유화 등으로 육류의 수입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야채 및 과일과 그 가공품은 일본의 국내외 작황 불량 및 엔高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엔高 및 국내 가격파괴 현상에 따라 유통망, 대형상사들이 개발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국내 저가품 소비선호경향 및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육류, 야채 및 과일과 그 가공품 등의 수입확대는 지속될 전망임.

○ 특히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음료수 분야의 수입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대형슈퍼 등 유통망들이 엔高 메리트를 이용, 일본산에 비해 저렴한 외국산 맥주, 와인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알코올 음료의 경우 농업합의에 따라 위스키는 10년, 맥주는 8년안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향후 외국산의 시장점유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전체적으로 對日 수출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채소 및 과일, 일부 육류, 김치를 제외한 조제식품 등에 있어서는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부터의 저가격품 수입확대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일본 유통망이나 대형상사 등이

개발수입, PB브랜드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엔高 등으로 저가격품에 대한 선호도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해서는 김치 등과 같은 對日 시장용 기호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 농산물 수출단지 확충을 통한 수출자와 생산자간의 계약재배 확대, 규격품 위주의 안정생산체계 정비, 국내작황 및 가격에 관계없이 對日 수출용 공급물량 확보, 일본의 농산물 검역 및 검사기준조사를 통한 세심한 통관

전략 수립, 일본내 농산물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등 제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일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입시장이고, 2~3일안에 일본 전국에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버섯이나 야채류 등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기공급 및 예냉시스템 확충 등 품질유지책을 강화하는 등의 수출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